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5
----------	----------

제출연월일	2007. 4. 23.
제출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2007. 1. 1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함에 따라,
- 수승대 관광지내 시설이용료(썰매장)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4조)
- 청소년, 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대학생·방위병 삭제), 어른 삭제
  - 나. 썰매장 이용료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별표 2, 별지 제4호서식)
  - 부가가치세 포함된 요금임을 표기
- 다. 법령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를 낫표(「 」)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나. 예산조치 : 추경반영계획  
(기 세입된 31,971천원에 대한 부가세 3,000천원)
- 다.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사항임)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를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입장·거절”을 “입장거절”로 하고, 동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2 시설이용료 중 나목 썰매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썰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 른
개 인	4,000	5,000	6,000
단 체	3,000	4,000	5,000

※ 이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썰매장 이용권

(앞면)

<p>썰매장 이용권 원본 일련번호 : 구 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p> </div> <p>발행일 :  수송대관광지관리사무소</p>	<p>썰매장 이용권 회수권 일련번호 : 구 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p> </div> <p>발행일 :  수송대관광지관리사무소</p>	<p>썰매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p> </div> <p>발행일 :  수송대관광지관리사무소</p>
--	---	---

°구분 : 어린이(개인, 단체), 청소년·군인(개인, 단체), 어른(개인, 단체)

°규격 : 180mm × 60mm(모조 100g/m<sup>2</sup>)

제1조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1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 시설이용료징수조례</u></p>	<p><u>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보호관리와 <u>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관광진흥법</u>」----- ----- ----- -----.</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u>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 포함)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3. 어른 :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제2호 이외의 자</p> <p>4. 노인 : 65세 이상인 자</p> <p>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p>	<p>제4조(정의) ----- -----.</p> <p>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p> <p>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p> <p>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p>
<p>제8조(관람료등의 면제)</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p> <p>1.~5. (생략)</p> <p>6.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p> <p>②~③(생략)</p>	<p>제8조(관람료등의 면제)</p> <p>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p> <p>1.~5. (현행과 같음)</p> <p>6.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②~③(현행과 같음)</p>

